



제3보험의 이해 2: 상해보험

오병국 연구원

- 상해보험이란 사람의 신체에 입은 **상해¹⁾**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임.

- 상해보험은 외부로부터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만이 보험사고로 간주되며, 이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(우연성) 피보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해사고가 발생하여야 함.
 - (외래성) 피보험자가 의도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라 볼 수 있는 자해행위, 자살 등으로 인한 상해는 상해사고가 아님.
 - (급격성) 신체허약, 질병 등과 같이 상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완만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를 사전에 예측하여 피할수 있으므로 상해사고로 볼 수 없음.

-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은 보장내용, 만기환급금 유무, 특약의 부가에 따라 다양한 상품설계가 가능함.
 - 보장내용에 따라 일반재해보장형, 교통사고보장형, 각종 레포츠사고보장형 등이 있음.
 - 만기환급금의 유무에 따라 순수보장형, 만기환급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.
 - 각종 선택 특약의 부가로 재해로 인한 수술, 입원, 생활보조금의 지급 등 추가로 보장하는 것이 가능함.

1) 상해보험에서는 외관상 분명한 상처자국, 상해로 인한 사망, 상해로 인한 장애 등을 상해로 간주함.

■ ■ 상해보험의 일반적인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(재해사망보험금)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직접적 사망을 보장함.
- (재해장해급여금)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함.
- (재해수술비)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을 때 이를 보장함.
- (입원급여금)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해 통상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.
- (만기환급금)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.

■ ■ 또한, 상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특징은 다음과 같음.

-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며, 가입대상 및 연령은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 고연령자도 가능함.
- 상해보험은 연령에 상관없이 단일률을 사용하므로 보험료는 동일하지만, 군단별 연령을 사용하여 연령별로 보험료가 다를 수 있음.
- 주보험계약에서 질병사망을 부가할 수 없고, 특약을 통해서만 질병사망을 보장할 수 있음.
-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(예: 암)에 의한 사망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이 소멸함.
- 2005년 10월부터 직업별 위험률이 적용되어 위험직업과 비위험직업 간에 상이한 위험률이 적용되고 있음.